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판독을 할 때 그 측정 내용을 포함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이하 “방사선 관계 종사자”라 한다)가 이 규칙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별표 5의 보고기한 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되기 전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서 그 업무에 종사한 전체 기간의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개인피폭선량 기록
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설치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기록

별표 2 제3호자목 중 “이하의”를 “미만의”로, “이하”를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 설></u>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측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판독을 할 때 그 측정 내용을 포함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u> 5. ·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u>원자력관계사업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u>
4. · 5. (생략) <u><신 설></u>	

	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이하 “방사선 관계 종사자”라 한다)가 이 규칙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별표 5의 보고기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되기 전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서 그 업무에 종사한 전체 기간의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설치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개인피폭선량 기록 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설치된 피폭선량 관리센터가 발행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기록
별표2 3. 취급기준 자. 기록준위 <u>이하</u>의 피폭방사선량은 “기록준위 <u>이하</u>”로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2 3. 취급기준 자.-----<u>미만의</u>----- -----<u>미만</u>”으----- -----.